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0-29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0누40589 취득세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A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
	담당변호사 [redacted]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20. 4. 16. 선고 2019구합4585 판결
변 론 종 결	2020. 8. 20.
판 결 선 고	2020. 9. 10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9. 5. 13. 원고에게 한 취득세 7,629,170원 및 지방교육세 653,920원의 징수처분(각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)이 무효임을 확인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0-29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,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【고치는 부분】

○ 2면 14행의 "2019. 7. 2."을 "2019. 7. 22."로 고친다.

○ 5면 6~9행의 "봄이 타당하고," 이하의 문장을 "봄이 타당하다. 이후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것은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. 원고는 위 증여계약이 B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, 설령 위 증여계약이 이후에 합의해제 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."로 고친다.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0-29

판사 [redacted]